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819호, 제1930호 )

2024. 06. 1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819, 1930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 05. 27.  
다. 회부일 : 2024. 05. 30.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6,1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억원(2.0%)이 증액되었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518,053	1,614,039	1,581,872	32,167(2.0%)	
일반회계	1,510,586	1,588,821	1,556,583	32,238(2.1%)	
세외수입	경상적	627	924	924	0(0.0%)
	임시적	73,678	102353	102353	0(0.0%)
국고보조금등	1,158,029	1,228,335	1,205,995	22,340(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8,251	257,210	247,311	9,898(4.0%)	
균형발전특별회계	7,467	25,218	25,289	-71(-0.3%)	
국고보조금 등	7,082	24,885	24,885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5	333	404	-71(-17.6%)	

## 나.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5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8억원(2.0%)이 증가하였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183,284	3,351,272	3,284,404	66,868(2.0%)
소계(일반회계)	3,151,087	3,272,054	3,205,186	66,868(2.1%)
행정운영경비	1,045	1,073	1,073	0(0.0%)
재무활동	8,584	8,467	1,668	6,800(407.7%)
사업비	3,141,459	3,262,513	3,202,445	60,068(1.9%)
소계(특별회계)	32,196	79,218	79,218	0(0.0%)
사업비	30,866	78,833	78,833	0(0.0%)
재무활동비	1,330	385	385	0(0.0%)

## 다.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179백만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신문광고료 7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성평등 증진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증가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서울시의 금번 1차 추경안은 ① 민생경제·동행 (3,682억 원) ② 안전 분야 투자 (1,137억 원) ③ 매력 분야 투자(773억 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음.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668억 6천8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4.4%에 해당함.

〈표1〉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도 추경안(A)	'24년도 기정예산(B)	증감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47,299,084	45,788,052	3.3	1,511,031
◇ 여성가족정책실(b)	3,351,272	3,284,404	2.0	66,868
※ 비중(b/a)(%)	7.1	7.2	-	4.4

-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3,512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844억원에서 668억 6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 (2.0%)하여 제출되었음.

〈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X1,230,880) 3,284,404	(X1,253,220) 3,351,272	(X22,340) 66,868	2.0%

- 여성가족정책실은 총 36개 사업의 669억원 예산편성하여 증액 31개 사업 683억6천6백만원, 감액 5개 사업 1,498백만원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① 양성평등담당관 8개 사업(33억9천6백만원) ② 영유아담당관 9개 사업(498억 5천7백만원) ③ 아이돌봄담당관 1개 사업(12억) ④ 아동담당관 4개 사업(63억2천6백만원) ⑤ 가족다문화담당관 8개 사업(74억6천4백만원) 으로 ⑥ 1인가구담당관 1개 사업(12억 3백만원) 임.
  - 감액편성 사업은 ① 아동담당관 3건 (10억8천6백만원) ② 가족다문화담당관 1건 (2억5천3백만원) ③ 1인가구담당관 1건 (1억5천9백만원)것임.
  - 세입 감액 편성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7천 1백만원임.

## 2 세입 및 세출 총괄

### 가. 세입

#### 1)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6,140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18억7천2백만원 대비 321억 6천7백만원(2.0%) 증가하였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518,053	1,614,039	1,581,872	32,167(2.0%)	
일반회계	1,510,586	1,588,821	1,556,583	32,238(2.1%)	
세외수입	경상적	627	924	924	0(0.0%)
	임시적	73,678	102,353	102,353	0(0.0%)
국고보조금등	1,158,029	1,228,335	1,205,995	22,340(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8,251	257,210	247,311	9,898(4.0%)	
균형발전특별회계	7,467	25,218	25,289	-71(-0.3%)	
국고보조금 등	7,082	24,885	24,885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5	333	404	-71(-17.6%)	

- 주된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가운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증액(98억9천8백)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223억4천)이며 감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천1백만원)가 있음.

## 나. 세출

### 1)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512억 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8억 6천8백만원(2.0%)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183,284	3,351,272	3,284,404	66,868(2.0%)
소계(일반회계)	3,151,087	3,272,054	3,205,186	66,868(2.1%)
행정운영경비	1,045	1,073	1,073	0(0.0%)
재무활동	8,584	8,467	1,668	6,800(407.7%)
사업비	3,141,459	3,262,513	3,202,445	60,068(1.9%)
소계(특별회계)	32,196	79,218	79,218	0(0.0%)
사업비	30,866	78,833	78,833	0(0.0%)
재무활동비	1,330	385	385	0(0.0%)

### 2)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6개 과에서 전부 추경예산안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담당관 9건 (498억 5천7백만원), 가족다문화담당관 9건 (72억 1천1백만원), 양성평등담당관 8건 (33억 9천6백만원), 아동담당관 7건 (52억 4천만원), 1인가구담당관 2건(10억 4천4백만원), 아이돌봄담당관 1건(1억2천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3,284,404	66,868	3,351,272	2.0	36
양성평등담당관	214,472	3,396	217,868	1.6	8
영유아담당관	2,072,211	49,857	2,122,068	2.4	9
아이돌봄담당관	172,049	120	172,169	0.07	1
아동담당관	654,532	5,240	659,772	0.8	7
가족다문화담당관	153,901	7,211	161,112	4.7	9
1인가구담당관	15,795	1,044	16,839	6.6	2
아동복지센터	1,444	0	1,444	0	0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일반회계 669억원 증액으로 분야별 세부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① 저출생 관련 사업 (6건, 133억), ② 약자동행 관련 사업(9건, 45억), ③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 반영 (18건, 42억원), ④ 국고보조금 반환 (3건, 68억) 등으로 구성됨.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합 계 (여성가족정책실)	(x1,230,880) 3,284,404	(x22,340) 66,868	(x1,253,220) 3,351,272	
	소 계 (양성평등담당관)	(x59,933) 214,472	(x1,174) 3,396	(x61,107) 217,868	
1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1,445) 17,629	(x994) 780	(x12,439) 18,409	<p><b>[국비]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훈련 : 국비 1,208백만원 증 - 훈련과정수 확정(133개)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li> <li>○ 운영비 : 국·시비 각 214백만원 감 - 새일센터 1개소 폐지*(26개→25개) ※ 한국IT새일센터 폐지 : '23.12.28.</li> </ul>
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x0) 17,150	(x0) 2,000	(x0) 19,150	<p><b>[자체시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및 감리비 : 111백만원</li> <li>○ 개보수공사비 등 : 1,889백만원</li> </ul>
3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x1,295) 4,347	(x17) 34	(x1,312) 4,380	<p><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소 운영비 증액 : 증33,622천원 (국·시비 각 50%) - 개소당 지원 단가 상승분 반영 · 일반 142,022천원 → 143,892천원 · 장애 185,929천원 → 188,268천원</li> </ul>
4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x402) 804	(x43) 85	(x444) 889	<p><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증액 85,080천원(국·시비 각 50%) - 피해자 의료비 추가 수요 반영하여 증액('23.10월 이후 '24년 의료비 수요 제출)</li> </ul>
5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x2,270) 4,539	(x6) 12	(x2,276) 4,551	<p><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 600천원 * 20개소</li> </ul>
6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238) 476	(x114) 228	(x352) 704	<p><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예산심의 시 추가수요 반영분 증액 228,288천원(국·시비 50%)</li> </ul>
7	늘봄학교 사업 지원	-	(x0) 50	(x0) 50	<p><b>[자체시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區 가용자원 안내를 위한 리플렛 제작 (교육지원청 배포용) : 35,000천원</li> <li>○ 교육(지원)청, 자치구, 시·구립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체 운영 : 9,000천원</li> </ul>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8	국고보조금 반환	-	(x0) 206	(x0)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회 pt등 제작 : 6,000천원</li> </ul> <b>[자체시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li> </ul>
	영유아담당관	(x777,235) 2,072,211	(x20,478) 49,857	(x797,713) 2,122,068	
9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x0) 53,697	(x0) 1,233	(x0) 54,930	<b>[자체시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액보육료 지원(일반) 인상분 반영 663,61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2.4%, 4-5세 2.6%</li> </ul> </li> <li>○ 차액보육료 지원(법정) 인상분 반영 8,51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2.4%, 4-5세 2.6%, 방과후 1.8%</li> </ul> </li> <li>○ 외국인아동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개월 추가 지원분(8→12개월) 560,923천원</li> </ul>
10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x1,094) 2,881	(x386) 1,015	(x1,480) 3,896	<b>[국비]</b>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위생관리지원금(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7개소×300천원×12개월 × 79% = 1,015백만원</li> </ul> </li> </ul>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073) 105,167	(x871) 2,294	(x19,944) 107,461	<b>[국비]</b>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겸직원장 지원(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26명×75천원×12개월 × 79% = 2,294백만원</li> </ul> </li> </ul>
12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x6,038) 22,616	(x12) 45	(x6,050) 22,661	<b>[국비]</b>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지원(파견) 지원대상 증가 2명(450명→4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2,401,000원×6개월 = 27,941천원</li> </ul> </li> <li>○ 대체교사 지원(직접채용) 지원대상 증가 40명(21,000명→21,0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명×93,690원×5일×79%+1,795천원 = 16,598천원</li> </ul> </li> </ul>
13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x34,203) 90,068	(x151) 397	(x34,354) 90,465	<b>[국비]</b>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교사 지원대상 증가 26명(4,068명→4,09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명×1,068천원×12개월 × 79% = 265백만원</li> </ul> </li> <li>○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대상 증가 13명(4,420명→4,4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명×1,068천원×12개월 × 79% = 132백만원</li> </ul> </li> </ul>
14	영유아보육료 지원	(x249,488) 463,245	(x13,999) 25,975	(x263,487) 489,220	<b>[국비]</b>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보육료 지원대상 증가 27.554명(55,086명→82,6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554명×401천원×1개월 × 83.5% = 9,226백만원</li> </ul> </li> <li>○ 영아반인센티브(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6명×401천원×1개월 × 83.5%</li> </ul> </li> </ul>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 708백만원 ○ 연장보육료 지원대상 증가 579,377시간 (276,047시간→855,424시간) - 579,377(시간)×3천원×1개월 × 83.5% = 1,451백만원 ○ 부모보육료 지원대상 증가 35,015명 (71,453명→106,468명) - 35,015명×499천원×1개월 × 83.5% = 14,590백만원
15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x0) 185,344	(x0) 9,734	(x0) 195,078	<b>[자체시비]</b> ○ 5세아 보육료 추가지원(신규) - 16,223명*50천원*12개월 = 9,734백만원
16	부모급여 지원	(x309,992) 575,207	(x4,428) 8,216	(x314,420) 583,424	<b>[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b> ○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증가 1,094명 (76,542명→77,636명) - 1,094명*12개월*750천원*83.5% = 8,216,400천원
17	자 치 구 육 아 종 합 지 원 센 터 설치지원	-	(x632) 948	(x632) 948	<b>[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b> ○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1개소 신규) : 948백만원
	<b>소 계 (아이돌봄담당관)</b>	<b>(x37,454) 172,049</b>	<b>(x0) 120</b>	<b>(x37,454) 172,169</b>	
18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x0) 7,740	(x0) 120	(x0) 7,860	<b>[자체시비]</b> ○ 하반기 부족예상 인원 추가 편성 = 800명*300천원*0.5(시·구비 5:5)
	<b>소 계 (아동담당관)</b>	<b>(x302,818) 654,532</b>	<b>(x△33) 5,240</b>	<b>(x302,785) 659,772</b>	
19	이동급식지원	(x0) 29,814	(x0) 3,360	(x0) 33,174	<b>[자체시비]</b> ○ 아동급식 단가 인상(8천원→9천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증액 - 연중 조·석식 : 19,454명 ×270일 ×1,000원×50% = 2,626,290천원 - 방학중 중·석식 : 24,456명×60일 ×1,000원×50% = 733,680천원
20	학 대 피 해 아 동 쉼 터 운영지원	(x895) 2,686	(x0) 227	(x895) 2,913	<b>[자체시비]</b> ○ 시립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 평균 32,031천원×4개소 = 128,124천원 ○ 시립시설 임대료 : 347천원×6개월 = 2,082천원 ○ 구립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평균 32,224천원×3개소 = 96,672천원
2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체)	(x0) 947	(x0) 35	(x0) 982	<b>[자체시비]</b> ○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 철거, 목공, 전기 공사 : 12,650천원 - 블라인드 등 : 950천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 사무비품 구입 - 컴퓨터(1,050천원×12대) : 12,600천원 - 책상, 의자, 서랍 등 : 8,832천원
22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x0) 2,000	(x0) △700	(x0) 1,300	[자체시비] ○ 지원인원수 감소분 : 10,000천원×70명 = 700,000천원
23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x0) 1,199	(x0) △302	(x0) 896	[자체시비] ○ 지원인원수 감소분 : 60천원×420명 ×12개월=302,400천원
24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x130) 324	(x△34) △84	(x96) 240	[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 지원인원수 감소로 국비 확정내시 반영 (27명→20명) : 1,000천원×7명×12월 =84,000천원
25	국고보조금 반환	(x0) 333	(x0) 2,704	(x0) 3,037	[자체시비] ○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등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소 계 (가족다문화담당관)	(x53,271) 153,901	(x817) 7,211	(x54,088) 161,112	
26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x0) 53	(x0) 155	(x0) 208	[자체시비] ○ 공공예식장 운영비 100,000천원 ○ 생중계 시스템 30,000천원 등
27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x0) -	(x128) 256	(x128) 256	[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 '24.7.19.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위기임신부 상담 및 보호출산 관련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신규사업 확정내시 반영 - 인건비 3,875천원 × 7개월 × 6명 (신규) = 162,750천원 - 운영비 : 93,490천원
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x257) 515	(x18) 35	(x275) 550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 국비가 확정되어 필요예산 증액 - (서대문구) '애란원' 개보수 : 증 13,792 천원(x6,896) - (송파구) '도담하우스' 개보수 : 증 5,170 천원(x2,585) - (강서구) '구세군한아름' 개보수 : 증 16,200 천원(x8,100)
29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x0) 3,916	(x0) 553	(x0) 4,469	[자체시비] ○ 대상자 확대('재학 중'→'학교 밖') 및 기준 중위소득 확대(60%→63%)로 증액 - 1,280명×108천원×4분기 = 552,960천원
30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x2,838) 9,460	(x747) 2,488	(x3,584) 11,948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24년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비(국시비 매칭비) 미확보분 반영
31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자체)	(x0) 2,548	(x0) 84	(x0) 2,632	[자체시비] ○ 국비 신규사업(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의 자치구별(11개구) 인력 차유간비 추가 편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 7,594,009원*11개=83,535천원
3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x1,921) 6,405	(x△76) △253	(x1,846) 6,152	<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 ○ 방문교육지도사, 자녀언어발달 전문인력 등 특성화 사업 인원 감축(△180백만원) 및 이중언어 직접학습 지원단가 하향조정(△73백만원)으로 감추경
33	국고보조금 반환	(x0) 50	(x0) 3,889	(x0) 3,940	<b>[자체시비]</b>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4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x0) 41	(x0) 4	(x0) 45	<b>[자체시비]</b> ○ 초단시간근로자 1명분 인건비 편성 (글로벌도시정책관 이체 예정)
<b>소 계 (1인가구담당관)</b>		<b>(x95) 15,795</b>	<b>(x△95) 1,044</b>	<b>(x0) 16,839</b>	
35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x0) 3,624	(x0) 1,203	(x0) 4,827	<b>[자체시비]</b>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 - 40천원(단가) × 30,000개 ○ 안심이 시스템 공공요금(문자발송) - 20원 X 144,800건
36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x95) 159	(x△95) △ 159	(x0) -	<b>[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b> ※ 가족다문화담당관 국고보조사업'가족센터 운영' 예산으로 통합 교부됨에 따라 중복 편성된 예산 감추경

### 3 사업별 검토의견

#### 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22>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은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 출연금 171억 2천3백만원에서 19억 9,984만원 증액한 191억 2천3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음.
- 추경사유는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자 함임.
- ※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 심의결과 '적정'

〈표〉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 부 내 역
계	19,149,640	17,149,794	1,999,846	
공공운영비	25,842	25,842	-	
출연금	19,123,798	17,123,952	1,999,846	√ 서울여성플라자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1,999,846천원 ◦ 공사비 1,880,680천원 ◦ 설계용역비 96,294천원 ◦ 감리용역비 14,872천원 ◦ 웨딩업체 등 자문회의비 8,000천원 (20만원×10명×4회)

- 한편 서울시에 추진 중인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를 위해 공공예식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임.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 운영공간 : 북서울 꿈의숲 등 35개소(예정)
  - 상반기 19개소 운영(신규 15개소, 기존 4개소) 후 하반기 추가 발굴 확대
- 운영방법 : 결혼운영 전문업체와 협약체결하여 상담 및 예식진행
  - 서울시 장소 제공, 결혼업체 예식 운영하는 공동협력사업(비예산)으로 추진
  - 결혼식 예약정보시스템 운영(패밀리서울), 상담전화 운영(☎1899-2154)
- 사업내용 : 예식공간 제공 + 웨딩상담·기획 + 예식진행

<서울시와 함께 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내용>



-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의 배경은 시장공약(13-15,저렴하고 의미있게 결혼하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예식장 장소 발굴·제공)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개성적, 친환경적 성향에 따라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예식하기 좋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예식비용을 절감시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함임.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의 공공예식장은 2023년 3월부터 24개의 공공예식장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24년 1월에 4개소의 신규 공공예식장을 지정하는 등 총28개(야외17개소, 실내11개소) 공공예식장이 운영중에 있음.
- 지난해 서울시 공공예식장 예약현황을 살펴보면 6개소에서 총 29건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29쌍의 부부가 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 특히 가장 예약이 집중된 공공예식장의 경우 야외 공원 및 한옥인 경우가 다수로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장소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서울시 공공예식장 예약현황(23.3~23.12)

※ 2023년: 29건(북서울숲 12, 시립대(자작나무) 5, 예향재 5, 광나루 장미원 4, 인재개발원 2,한방1건)

연번	예식장소	예식일	요일	연번	예식장소	예식일	요일
1	북서울꿈의숲	2023-06-11	일	16	시립대 자작나무	2023-10-14	토
2	북서울꿈의숲	2023-09-10	일	17	시립대 자작나무	2023-10-29	일
3	북서울꿈의숲	2023-09-16	토	18	예향재	2023-06-18	일
4	북서울꿈의숲	2023-10-08	일	19	예향재	2023-09-17	일
5	북서울꿈의숲	2023-10-14	토	20	예향재	2023-10-08	일
6	북서울꿈의숲	2023-10-15	일	21	예향재	2023-10-15	일
7	북서울꿈의숲	2023-10-21	토	22	예향재	2023-10-29	일
8	북서울꿈의숲	2023-10-22	일	23	광나루 장미원	2023-06-11	일
9	북서울꿈의숲	2023-10-28	토	24	광나루 장미원	2023-06-11	일
10	북서울꿈의숲	2023-10-29	일	25	광나루 장미원	2023-10-22	일
11	북서울꿈의숲	2023-11-04	토	26	광나루 장미원	2023-10-22	일
12	북서울꿈의숲	2023-11-05	일	27	인재개발원	2023-12-03	일
13	시립대 자작나무	2023-09-16	토	28	인재개발원	2023-07-29	토
14	시립대 자작나무	2023-09-24	일	29	한방진 흥센터	2023-11-04	토
15	시립대 자작나무	2023-10-07	토				

○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가까운 지인들과 뜻깊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스몰웨딩 트렌드 확산에 따라<sup>1)</sup> 전년도 호응이 높은 공공예식장은 100명에서 150명 내외의 야외 장소였음. 서울시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식 장소로 한옥(52.8%)을 가장 선호하고, 공원(25.7%)·미술관(17.2%)·박물관(3.2%)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이에 2024년 하반기까지 총 99건의 결혼식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장소 역시 예비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야외 등의 장소가 다수임.

- 2024년: 99건

(북서울숲 43, 시립대 17, 한방 14, 예향재 9, 시민청 3, 문화비축기지 2, 광나루 2, 새활용 2, 서울도시건축 2, 선유도 1, 송현 1, 인재개발원 1, 보라매 1, 서울플라자1)

○ 한편 대표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의 경우 기존 교육, 세미나, 행사 등 '23년에 249건, 월평균 약 21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대관에 따른 수입액은 연간 1억 4,977만원으로 자체수입(시설운영수입)으로 세입편성되고 있음.

〈표〉 연도별 국제회의장 대관 이용실적(24.5.기준)

구분	대관 건수(단위:건)				대관수입 (단위:천원)	이용인원 (단위:명)
	교육	행사	회의	합계		
2023년	70	89	76	235	149,775	37,390
2024년	25	28	40	93	59,600	17,705

1) 중앙일보.“결혼식 단돈 900만원에? 진짜 특별한 '스몰 웨딩' 이 곳 뜬다”(2024.2.18)



- 결혼장려 문화 조성 과 예비부부 지원이라는 시의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나, 교육, 세미나, 행사 등으로 활용되던 대규모 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대표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결혼식장 용도가 아닌 기존의 교육이나 세미나와 같이 타 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자체수입으로 편성되던 대관 수입액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3년 공공예식장 사업 이후 28개소에서 29건의 결혼식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공공예식장 이용수요가 충분한지 분석하고, 국제회의장이 공공예식장으로 주차나 식사제공 등의 편의제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나.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128>

-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안심택배함, 안심이 앱 및 관제 센터 등을 통해 안전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을 통한 24시간 안심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24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36억 2,446만원으로, 추경안은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2억 290만원을 증액(33.2%증가)하여 48억 2,735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827,351	(x-) 3,624,455	(x-) 1,202,896	
사무관리비	(x-) 1,768,360	(x-) 568,360	(x-) 1,200,000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 1,200,000천원 - 40,000원*30,000개
공공운영비	(x-) 680,734	(x-) 677,838	(x-) 2,896	○ 안심이 시스템 공공요금(문자발송) 2,896천원 - 20원*144,800건
전산개발비	(x-) 408,000	(x-) 408,00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624,984	(x-) 1,624,984	(x-) 0	
자산및물품 취득비	(x-) 345,273	(x-) 345,273	(x-) 0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휴대용 안심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000천원), ② 안심벨 이용자 대상 문자발송 요금을 위한 공공 운영비(2,896천원)임.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2024.5.3.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5.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6조<sup>2)</sup>에 근거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23년도부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였으나 지급대상을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서 ‘사회안전약자’를 포함해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
- 이에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8억원은 이체되지 않고 타부서 사업(여성가족정책실)으로 사용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집행부서는 2024.3.14.일자로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1인가구담당관-3353)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를 위한 일상감사 의뢰(1인가구담당관-3404)를 하였음.
  - 또한 2024.3.22.일자로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 입찰을 2024.3.26.(화) 긴급공고하여 2024.4.3.(수)~4.5.(금)까지 3일간 입찰을 진행(1인가구담당관-3762)하였으며, 구매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sup>3)</sup>, 구매계약(품의등록)<sup>4)</sup> 등 해당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가 시행

2)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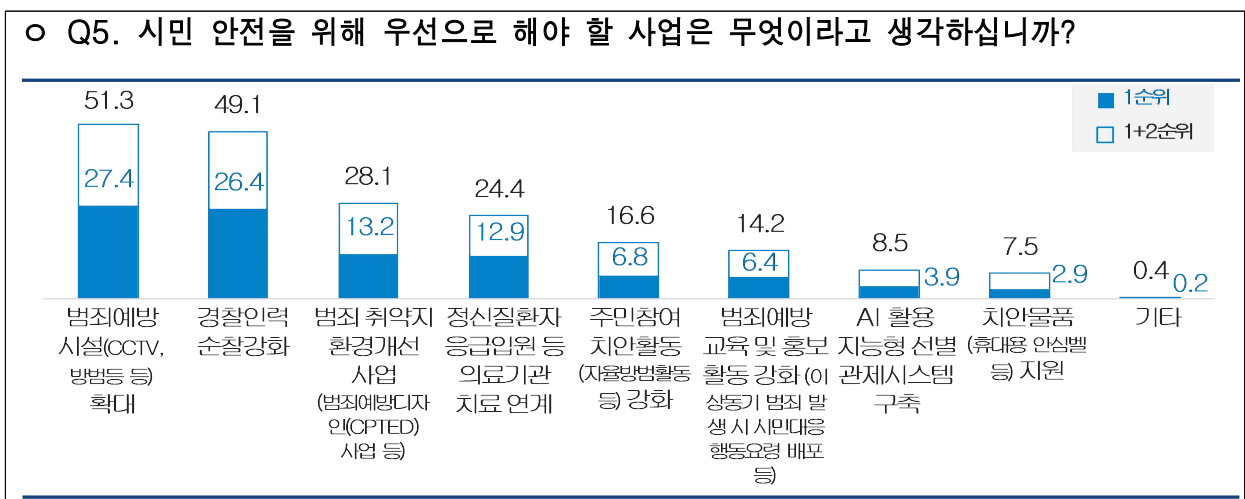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4.05.20.)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2024.5.20.일자 시행으로 집행부서는 아직까지 안심벨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지급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안심벨 30,000개를 구매하기 위해 12억원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음.
-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범죄 예방시설 확대(51.3%), 경찰인력 순찰강화(49.1%),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28.1%) 등의 높은 응답을 하고 있으나, 치안물품(휴대용 안심벨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과 본 제정안의 규정하는 사업(안심벨)은 차이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1인가구담당관-4260), 2024.4.3.  
 4)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품의등록)(1인가구담당관-4914), 20204.4.23.

-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으나<sup>5)</sup>,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목적적합성·예측 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sup>6)</sup>.
- 여성가족정책실이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안심물품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8억원을 타부서 사업으로 이미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가로 물품구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다.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5월말 현재 집행률이 30% 미만의 사업들이 일부 있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당 예산 집행 가능성과 다음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됨.

5)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6)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30.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및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일부 사업 등에서 대상자(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률 저조하므로 향후 면밀한 추계와 감추경이 요구되는 바임.
- 하반기에 집행 예정되어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예산이 불용되어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여성가족정책실 합계(229개)	3,286,749	1,624,568	49.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14,472	125,318	58.4%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5,173	3,536	68.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4,008	1,443	36.0%	
여성발전센터 운영	8,279	5,087	61.4%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6,882	3,342	48.6%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7,629	10,400	59.0%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315	294	93.3%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874	920	49.1%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7,150	6,780	39.5%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40	-	0.0%	- 교육안 마련 중으로 교육 실시 시기 미도래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54	45	83.3%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355	355	100.0%	
첫만남 이용권 지원	66,288	53,031	80.0%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44	26	59.1%	
임산부 교통비 지원	33,496	12,121	36.2%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272	82	30.1%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2,555	1,285	50.3%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47	51	34.7%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31	65	49.6%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424	94	22.2%	- 집행시기 미도래, 하반기 추가 집행(교부)예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유지 관리 및 고도화	392	118	30.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5,245	7,642	50.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08	39	36.1%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420	247	58.8%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296	2,148	50.0%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4,347	2,363	54.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608	326	53.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8	8	10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4	491	61.1%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151	75	49.7%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124	113	91.1%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70	35	50.0%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7,483	3,952	52.8%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60	-	0.0%	- 공사 시작 지연으로 6월 중 전액 집행 예정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4,539	2,902	63.9%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2,881	1,958	68.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39	139	10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476	380	79.8%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309	185	59.9%	
불법 성산업 감시	891	347	38.9%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379	185	48.8%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818	397	48.5%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보조)	175	94	53.7%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자체)	922	473	51.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256	128	50.0%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267	134	50.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510	839	55.6%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778	282	36.2%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0	5	50.0%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239	120	50.2%	
기본경비	551	136	24.7%	- 부서 수요에 따라 집행중, 월별 집행예정
기금 전출금	100	100	100.0%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72,211	1,051,622	50.7%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3,697	25,037	46.6%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2,881	1,948	67.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5,167	47,055	44.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34,870	15,084	43.3%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3,010	151,254	4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2,616	9,372	41.4%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자체)	1,532	790	5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0,068	37,694	41.9%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28,054	11,637	41.5%	
가정양육수당 지원	36,866	20,571	55.8%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3,245	227,104	49.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85,344	92,904	50.1%	
특화보육 지원(자체)	54,904	25,933	47.2%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2,245	1,120	49.9%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전환사업)	4,460	2,230	50.0%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020	1,020	100.0%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39	32	23.0%	- 집행시기 미도래, 연내 전액 집행 예정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6,056	2,977	49.2%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95	217	54.9%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54	32	59.3%	
보육주간 운영	100	-	0.0%	- 집행시기 미도래, 보육주간(10월 4주) 집행 예정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7,494	3,201	42.7%	
부모급여 지원	575,207	357,560	62.2%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583	826	52.2%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3,372	2,715	80.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818	6,201	39.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2,264	2,264	100.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5,523	2,927	53.0%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649	308	47.5%	
기본경비	65	35	53.8%	
국고보조금 반환	6	-	0.0%	- 24.6월 중 100% 집행 예정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집행잔액 반환	688	688	100.0%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819	886	31.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74,136	87,847	50.4%	
아이돌봄 지원(보조)	62,948	37,607	59.7%	
아이돌봄 지원(자체)	6,691	4,422	66.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7,740	3,870	5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1,559	1,085	69.6%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1,925	961	49.9%	
서울상상나라 운영	5,413	3,208	59.3%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58	101	63.9%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25,889	6,310	24.4%	- (운영비) 분기별 교부로 집행시기 미도래(개소 일정 등에 따라 추가 집행 예정) - (설치비) 공간선정심의(격월) 개최 후 하반기 예산 추가 집행 예정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437	448	31.2%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 추진	1,000	100	10.0%	- 발행액에 대해 6월 이후 정산 처리 예정임(6~7월중 6억원 집행예정) - '24.9월 상품권 15억 추가발행 예정(10월중 3억 집행예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6,264	3,183	50.8%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45	11	24.4%	- 사업수요감소, (사업계획) 2개소 → (신청) 1개소 - 수요조사 재 실시 및 수요 발생 시 즉시 예산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504	252	50.0%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997	499	50.1%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5,205	2,600	50.0%	
기본경비	69	69	100.0%	
국고보조금 반환	473	473	10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046	-	0.0%	- 5.31.기준 97% 집행완료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2,016	-	0.0%	- '24.7.~11. 공사 시행에 따라 집행 예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	2,069	1,156	55.9%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36,202	19,151	52.9%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76	40	52.6%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3,844	1,916	49.8%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181	-	0.0%	- 강서센터 개관 일정에 따라 12월 집행 예정
국고보조금 반환	385	385	1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654,641	285,654	43.6%	
아동수당 지원	382,246	158,677	41.5%	
아동친화도시 추진	434	122	28.1%	- 자치구 공모 및 행사 등 일정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
아동안전보호	283	145	51.2%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1,404	47,226	46.6%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4,983	2,562	51.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438	719	50.0%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4,286	5,654	39.6%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지원	300	184	61.3%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157	125	79.6%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1,199	228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진사유 : 교통비 지급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산정에 포함되어 수급비 감액 우려로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저조</li> <li>- 향후계획 : 감추경 예정 및 관련 법령 정비하여 '24.4월부터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적극 홍보·안내 및 신청 편의성 개선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li> </ul>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9,420	3,699	39.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999	402	40.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1,276	608	47.6%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체)	947	382	40.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사업비)	1,961	839	42.8%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 지원	1,634	900	55.1%	
입양아동가족지원(보조)	3,755	1,641	43.7%	
가정위탁아동 지원	5,650	2,381	42.1%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2	14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 대상으로 선정 후, 대상자가 꾸준히 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집행률은 낮으나 치료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치료 독려로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li> </ul>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6	53	94.6%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8	2	25.0%	- 예산 편성인원(4명) 대비 현재 지원인원(3명)이 적어 집행률 낮으나 추가 선정 및 분기별 지출로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260	446	35.4%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695	1,427	38.6%	
아동급식지원	29,814	15,050	50.5%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845	2,425	50.1%	
아동보호전문요원 총원	3,823	2,104	55.0%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0	3	30.0%	- 보건복지부 내시인원(14명) 대비 실제지원대상(3명) 과소 발생하여 집행률은 낮으나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24	83	25.6%	- 예산 편성인원(27명) 대비 현재 실 지원인원 16명 발생하여 집행률은 낮으나 감추경(27명 → 20명) 예정 등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4,963	9,203	36.9%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특수목적형, 토요일운영)	641	610	95.2%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673	2,176	46.6%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336	168	50.0%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2,000	880	44.0%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 환경 조성	40	-	0.0%	-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등 사전절차 진행 중(2분기 전액 집행예정)
서울어린이 정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지원	165	165	100.0%	
자치구 자립지원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300	193	64.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9,933	5,868	59.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686	1,291	48.1%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843	419	49.7%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300	142	47.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	100	50	50.0%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41	-	0.0%	- 기관 운영 일정상 2분기 집행예정
국고보조금 반환	333	18	5.4%	- 자치구 정산지연으로 인해 집행률이 낮으나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
기본경비	55	27	49.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4,762	3,843	80.7%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6,201	12,500	47.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154,051	66,082	42.9%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390	695	50.0%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	20	17	85.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8	1,842	59.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4,279	2,549	59.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142	111	78.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185	86	46.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310	120	38.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자체)	301	120	39.9%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16	76	35.2%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6	21	58.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40	325	95.6%	
폭력피해자 주거운영 자립상담원 지원	213	106	49.8%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자체)	50	9	18.0%	- 상반기 공모시 입지,가격 등 적절한 임대주택 물량 부족으로 1호 지원, 하반기 공모시 재추진(연 2회)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1,502	886	59.0%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7,910	3,896	49.3%	
가족학교 운영지원	760	384	50.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38	186	55.0%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53	33	62.3%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4,015	978	24.4%	- '24.6.7. 2분기 보조금 교부 예정(950백만원)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자체)	284	66	23.2%	- 집행시기 미도래(분기별 집행)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304	1,387	6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213	4,063	39.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15	207	40.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98	143	48.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15	307	49.9%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2	8	19.0%	- 신규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연('24.5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73	52	30.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7,314	27,069	3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916	961	24.5%	- 집행시기 미도래(분기별 집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72	127	34.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 지원(자체)	493	169	34.3%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208	98	47.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4,726	2,452	51.9%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41	7	17.1%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4~12월 월별 활동비 지급, 연도말 집행완료 예정) 등 연도말 집행예정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755	479	63.4%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60	39	65.0%	
세계인의날 행사 운영	18	1	5.6%	- 행사 이후 5.31.기준 97% 집행완료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9,460	6,604	69.8%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자체)	2,548	1,784	70.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6,405	4,260	66.5%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39	120	50.2%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자체)	385	293	76.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286	131	45.8%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575	372	64.7%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75	137	49.8%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53	15	28.3%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6월 말 운영비 지급)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연도말 집행완료 예정)

( ' 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지원	860	436	50.7%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349	176	50.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343	1,606	48.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34	34	1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31	7	22.6%	- 집행시기 미도래(지원내용별 해당월에 집행예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5	-	0.0%	- 집행시기 미도래(9월 주거지원시설 임대차 재계약 시 집행)
기본경비	63	32	50.8%	
국고보조금 반환	50	-	0.0%	- 하반기 반환금 반납 예정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1,605	-	0.0%	- 자치구에서 하반기 공사 시작 예정으로 자치구 수요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교부 예정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5,795	7,678	48.6%	
안심귀가스카우트	3,391	1,002	29.5%	- 집행시기 미도래(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사업추진 중 100% 집행 완료 예정)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624	1,954	53.9%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2,571	1,279	49.7%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945	995	51.2%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380	171	45.0%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2,856	1,607	56.3%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563	563	100.0%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253	80	31.6%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58	-	0.0%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과 예산 세부사업이 통합되어 감추경예정
기본경비	54	27	5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1,443	367	25.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137	7	5.1%	- 집행시기 미도래(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 100% 집행 완료 예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1,043	252	24.2%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0	3	30.0%	- 매월 정상집행중, 하반기 전액 집행예정
입양활성화 지원	21	21	100.0%	
기본경비	215	67	31.2%	
국고보조금 반환	17	17	100.0%	

#### 4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 2023회계연도 성평등가족기금결산 결과, 2024회계연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797백만원에서 179백만원 증가한 976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 2024년 공모사업 신문공고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당초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신문공고료 7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성평등증진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함.

〈표 5〉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분	24년(A)	24년(B)	24년(C)	증감 (C-A)	구분 (정책사업)	24년(D)	24년(E)	24년(F)	증감(F-D) (증감률)
	당초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당초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계	1,877	1,877	2,056	179	계	1,877	1,877	2,056	179
예치금회수	714	714	893	179	비용자성사업비	1,060	1,060	1,067	7
일반회계전입금	100	100	100	-	기본경비	20	20	13	△7 (△35%)
이자수입	1,036	1,036	1,036	-	예치금	797	797	976	179 (22.44%)
기타수입	27	27	27	-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 및 광고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됨.

(기존)사무관리비 → (변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 5〉 2024년도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증감	증감율
지출합계	1,877	1,877	2,056	179	9.5
성평등 증진	1,060	1,060	1,067	7	0.66
여성 권익증진 사업(성평등기금)	1,060	1,060	1,067	7	0.66
공모사업 추진	850	740	747	△103	△12.1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모사업 컨설팅)	50	50	50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공모사업)	800	690	690	△110	△13.75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신문공고료)			7	7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		110	110	110	
연구개발비		110	110	110	
성평등 주간행사	60	60	60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100	100	100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사업	50	50	50		
일반예산(재무활동)	797	797	976	179	22.44
보전지출(성평등기금)	797	797	976	179	22.44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797	797	976	179	22.44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	20	20	13	△7	△35
기본경비(성평등기금)	20	20	13	△7	△35
기금관리비	20	20	13	△7	△35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신문공고료)	20	20	13	△7	△35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성평등가족기금의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7)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함.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8)</sup>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sup>9)</sup>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 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2.44%, 1억7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예산과 달리 기금은 상대적으로 운용변경계획이 가능하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임.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9)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 22. 7), p.296